

2026년 「부여군 동물보호센터」 지정 및 운영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문

동물보호법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, 제3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,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, 제36조(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)의 규정에 의거 유실·유기동물 등의 구조·보호 조치를 위한 2026년 「부여군 동물보호센터」 지정 및 운영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5일

부 여 군 수

1. 공고개요

가. 지정기간: 2026. 1. 1. ~ 12. 31.(1년간)

나. 공고기간: 2025. 12. 5. ~ 12. 19.(15일간)

다. 운영비 지원금액: 230,000,000원

라. 주요업무

1)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

2) 유기 · 유실 동물의 구조 · 포획 · 보호조치

3)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

4) 동물의 기증 · 분양 · 반환 등

5) 길고양이 중성화사업(포획·방사) 등

6)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

7) 반려동물사육 및 유실 · 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

8)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

9) 그 밖에 동물의 구조 ·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※ 연중무휴 운영

마. 신청 전 필수조건

- 1) 신청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를 사전에 완료하거나,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2)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3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.

바. 신청자격

- 1)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4(붙임)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갖추고, 향후 지정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(붙임)에 따른 준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(법인) 또는 동물병원 등
- 2) 개인이나 단체(법인)의 경우 상기 시설, 장비 외 구조 동물을 입소 전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과 협약을 필수로 체결하여야 한다.

바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(이하 “보호 비용”) 및 운영비의 지원 등

- 1) 군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비용과 센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금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.
- 2) 또한, 보호 비용 등의 지원을 받는 동물보호센터는 그 비용을 청구 또는 정산 보고할 때, 그 비용의 지출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(전산 출력물, 전자세금계산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사. 지정의 제한

- 1) 「동물보호법」 제36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이나 단체 등

<「동물보호법」 제36조제4항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
4.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5. 제46조를 위반한 경우
6.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7.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·유기동물 및 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
8.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

- 2) 「동물보호법」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이나 단체 등

아. 재공고에 관한 사항

- 1) 군은 최초 공고 및 접수 기간 내 접수된 지정신청서 등이 없는 경우 원활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, 신청 건이 1개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지 않고,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.
- 2) 단, 군 동물보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군 직영으로 운영할 시 재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신청 및 접수

가. 접수기간: 2025. 12. 5. ~ 12. 19.(15일간)

나. 접수방법: 우편 및 방문접수(원본제출)

다. 접수처

- 1) 담당부서: 부여군청 축수산과 동물보호팀(☎ 041-830-3877)
- 2) 주소: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75, 2층 축수산과 동물보호팀
- 3) 우편번호: 33160

라. 제출서류

- 1)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및 운영비 지원신청서 각 1부
- 2)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(운송 차량 포함)
- 3)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1부(근로계약서 등)
- 4) 동물의 구조·보호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) 1부
- 5) 사업계획서 1부

마. 참고사항: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사업 추진계획(별첨)

3. 선정 및 통지

가. 선정방법(종합평가)

1) 1차 서류심사

-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 여부, 사업계획 적합성 등 검토

2) 2차 현장심사

-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 평가

나. 결과통지: 개별 통지

4. 기타 행정사항

가. 유의사항

- 1)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 있음.
- 2)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,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나. 문의사항: 부여군청 축수산과 동물보호팀(☎ 041-830-3877)

불임 1

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식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

*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40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기관명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
	소재지 및 전화번호	

구조·보호	
대상 동물	

「동물보호법」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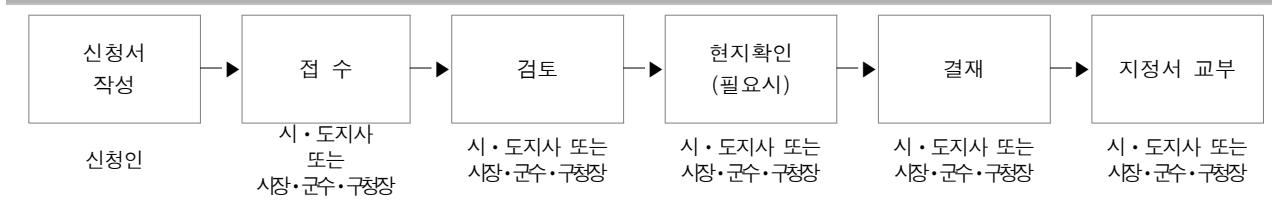
부여군수 귀하

첨부서류	1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3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1부 4. 동물의 구조·보호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5.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-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검토 시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붙임 2**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신청서****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**

(담당부서 : 축수산과 동물보호팀)

신청단체	개인·단체· 법인명			
	대 표 자	※ 단체·법인인 경우		
	연 락 처	사무실 : (휴대전화 :)		
	소 재 지	(우편번호 : -) ※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		
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	사 업 명			
	사업(활동) 개 요	<input type="radio"/> 추진기간 : 2026. 1. ~ 2026. 12. <input type="radio"/> 장 소 : <input type="radio"/> 수용두수 : 두 <input type="radio"/> 주요내용 -		
	사 업 비	총 원	지 원 금	천원(100%)
	담 당 자 (기관·단체의 경우만)		자기부담금	천원(초과분)
전년도 및 이전지원금 신청 · 지원받은 이력	<input type="radio"/>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력: 신청액, 지원 받은액 등 기재			

위와 같이 2026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붙임 : 사업계획서 1부

20 년 월 일

개인·단체·법인명 :

대표자(성명)

(인)

부여군수 귀하

[첨부서류 : 사업계획서]

사업계획서

1. 사업명: 2026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

2.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
-

3. 사업개요

- 기간: 2026. 1. ~ 2026. 12.
- 장소:
- 사업대상:
- 사업내용:
—

4. 지원사업 수행계획

추진시기	주요내용	사업비(천원)	비고

5.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

-
-

6. 집행잔액 발생 시 처리계획

-
-

7. 지원금 신청내역

- 총 사업비 : 천원(100%)
- 지원금 : 천원(100%)
- 자체부담 : 천원(초과분)
- 사업비 사용방법 : 신용(체크)카드, 계좌입금 등
- 소요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내용	예산구분 (분야별사항임)	금액 (단위:천원)	산출기초	비고
총계			(100%)	
신청 보조금		(소계)	(%)	
세부사업①		2,000	<input type="radio"/> ○(예: 흥보책자인쇄 4,000원*500부) <input type="radio"/>	
			<input type="radio"/>	
			<input type="radio"/>	
			<input type="radio"/>	
			<input type="radio"/>	
자기 부담금		(소계)	(%)	
세부사업①			<input type="radio"/>	
			<input type="radio"/>	
세부사업②			<input type="radio"/>	
		<input type="radio"/>		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 : 단위 세부사업별 ①,②로 구분되도록 기재
- ② 예산구분 : 진료비, 인건비, 운영비, 공공운영비 등 사업비 구분을 명시함
- ③ 금액 : 천원 단위로 작성
- ④ 산출기초 : 구체적인 산출근거식 기재 * (예 : 단가×회×명 등)

불임 3**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표(안)****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표**

(점검일: 2026. 1. .)

기관.단체명	수용두수	구 分	배 점	평 가	비 고
		총 점	100		
		동물보호센터 시설	50		
		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	50		

□ 동물보호센터 시설관리 평가표

구 分	항 목	배 점	평 가
소 계		50	
일반기준 ②	설비 시설 (10)	보호실, 격리실, 사료보관실 및 진료실을 각각 구분 설치하였는가? (단,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실 제외)	5
		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했는가? (단,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구조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외)	5
	경비 시설 (3)	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, 방범, 출입 통제 장치가 있고, 시설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는가? (단, 단독 건물로 시설 자체가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 담장, 울타리 제외)	3
		시설의 청결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·배수시설이 있는가?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가?	4 3
	위생 시설 (7)	동물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인도적처리(안락사)공간이 있는가? (단, 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출 시 그 시설로 대체 가능)	2
		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었는가?	1
	진료실 (5)	진료에 필요한 기구·장비를 갖추었는가?(진료대, 소독장비 등)	3
		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가?	2
	사육실 (8)	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가?	3
		동물별 적합한 사육실 구조 및 운동장이 있는가?	3
		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?	2
개별기준 ②	격리실 (7)	전염병 전파로부터 별도 구획, 독립된 건물이거나,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구에 소독조가 있는가?	3
		온도·습도조절이 가능하고, 채광·환기가 충분하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?	2
		외부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관찰 할 수 있는가?	2
	보호실 (2)	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고, 채광과 환기가 충분한가? (외부에 노출된 경우, 직사광선, 비바람 등을 피할 시설을 갖추어야 함)	2
	사료보관실 (5)	청결하게 유지되며, 해충이나 쥐 등을 방지하고 있는가?	3
		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'그 밖의 관리물품'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가?	2

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 평가표

구 분	항 목	배 점	평가
소 계		50	0
동 물 보 호 센 터 운 영 능 력 (50)	보호센터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(5)	관내 위치	3
		관외 위치	2
	인력 구성 (15)	상근 수의사 (4)	있음 4
			외부위탁 2
	포획 구조 인원 (4)	2명이상	4
		2명미만	1
	시설 위생 및 동물 보호관리 인원 (3) 20마리 당 1명 이상	3명이상	3
		1명이상	1
		없음	0
	사무 관리자 유무 (2)	2명이상	2
		1명	1
	야간(휴일) 관리인원 유무 (2)	있음	2
		없음	0
	운영계획의 합리성 (15)	유기동물 관리 직원 경력 및 임양활성화 방안 (10)	상 10
			중 6
			하 3
	장비내역 (15)	보조금 외 동물보호센터 운영 자금 조달계획 유무 (5)	있음 5
			없음 0
	운반장비 (10)	2대이상	10
		1대	5
		없음	0
	포획장비 (5)	5점이상	5
		5점미만	0

그 밖의 의견

—

(점검자) 소속 축수산과 동물보호팀 직 성명 (인)
 (확인자) 소속 직위 성명 (인)